

【붙임2】

『2015년 성동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표 준 협 약 서 (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업 제안자(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와 “마을사업지기”간에 2015년도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구”와 “마을사업지기”간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마을사업지기”는 “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마을사업지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 사업명 :
- ▷ 사업기간 : 2015. . . ~ 2015. . . (○개월간)
-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6조(협조 및 의무) ① “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마을사업지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구”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 ①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마을사업지기”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추가로 필요한 마을사업지기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구”가 “마을사업지기”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구”는 “마을사업지기”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산서는 지출합계표에 의거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는 제2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마을사업지기”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마을사업지기”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발생이자 자동출금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구”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구”에 반납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마을사업지기”에게 있다.

제11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마을사업지기”가 진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와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5년 월 일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 동 구 청 장 정 원 오 ①

<“마을사업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로 ○○

대 표 자 ○ ○ ○ ①

첨부 1. 사업제안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및 기관 제출용) 각 1부